

# 초과근무가산금(현장근무) 지급기준 안내

## ■ 지급기준

구분	내용
지급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① 월 13일 이상 현장근무한 자로서 ② 전주상에서 또는 지하에서 ③ 케이블 포설 및 선로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자</li> <li>• ①, ②, ③ 기준 모두 충족하는 상시적인 현장근무자 限</li> </ul> <p>※ 부당지급 건은 전액환수 조치</p>
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준연봉월정액 × 1.5 ÷ 209 × 7시간</li> <li>- 단, 안식년휴가로 현장근무일이 월 13일 미만인 경우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(예. 10일 현장근무시 10일/13일 지급)</li> </ul>

☞ 복무담당자가 ERP(담당업무)에서 근무유형 ‘현장근무’ 지정 및 근무표 신청

## ■ 주요 대상부서/직무(지급기준과 대상부서/직무를 모두 충족시 지급)

구분	주요 부서명		직무
고객본부	지사/지점	CM팀	선로운영/관리
	법인고객담당	Biz지원팀	Biz개통/AS
NW운영본부	액세스운영센터	선로통신구팀, 선로팀, 통신구팀	선로운영/관리
		엔지니어링부	무선액세스망운영/관리
		도서무선통신팀	전송망운영/관리

☞ 상기부서 외 지급대상 여부는 경영지원실 보수팀에 사전 문의 必

※ 복무담당자 및 직책자는 초과근무가산금(현장근무)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부당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